

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

-신용조회업에서 금융분야 핵심 데이터 산업으로-

2018. 11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신용정보산업에 대한 평가	2
<참고1> 현행 신용조회회사(CB사) 현황	3
<참고2> 신용정보집중기관 현황	4
III.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	5
1. 혁신적 신규 Players 출현 유도	6
2. CB사에 빅데이터 업무 허용	10
3. 신용정보산업 인프라 정비	11
4. CB업 책임성·투명성 제고	13
IV. 향후 추진계획	14

I. 추진 배경

□ 정부는 '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'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경제 전환을 위한 규제 혁신을 추진

○ 대통령 주재 「데이터 경제 활성화 현장방문(8.31일)」 행사 등을 통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

- ①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및 활용범위, 데이터 결합 등 빅데이터 분석·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
- ② 정보보호 관련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구로서 '개인정보보호위원회'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여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조화
- ③ 정보보호 일반법인 「개인정보 보호법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「신용정보법」 등 정보보호 법률간 유사·중복 규제 정비

○ 「개인정보보호법」, 「정보통신망법」, 「신용정보법」 등 개정 추진

* 11.21일 당정협의를 개최(당 : 홍영표 원내대표, 김태년 정책위의장, 정무위·행안위·과방위 위원장 등, 정 : 최종구 금융위원장, 방통위·행안부 등 참석)

□ 금융위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혁신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가과제를 마련

- ① 신용점수제 도입, 평가의 객관성·투명성·책임성 강화,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 등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 (1월)
- ②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(3월)
- ③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, 프로파일링 대응권, 금융권 정보활용 상시평가제 등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(5월)
- ④ 마이데이터(MyData) 산업 도입방안 (7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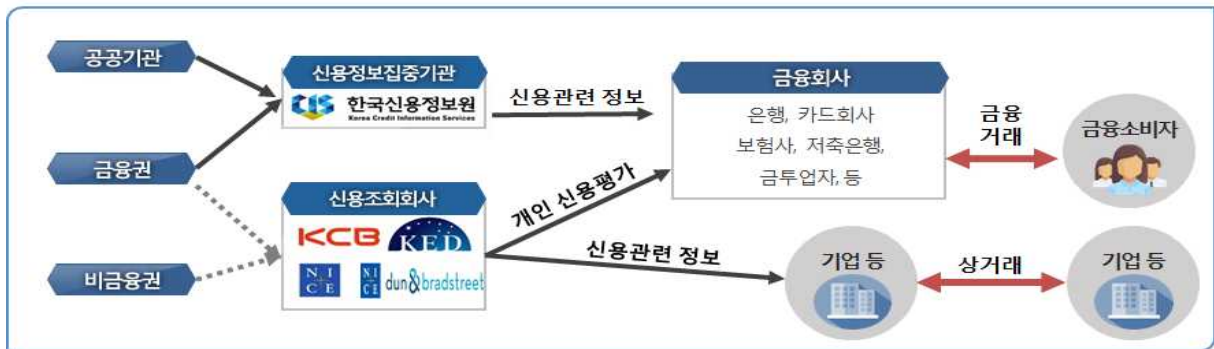
○ 특히, 신용정보산업을 선진화 방안을 「신용정보법」 개정안*에 반영하여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

* 11.1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

II. 신용정보산업에 대한 평가

- 신용정보산업이란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·유통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의미
- 국내 신용정보산업은 신용정보 사업자로서의 신용조회회사(CB: Credit Bureau)와 인프라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구성
 - 신용조회회사(CB사)는 개인·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·제공·관리하고, 금융거래 등을 위해 신용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
 - 신용정보집중기관(신용정보원)은 금융회사·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여 CB사·금융회사 등과 공유

< 신용정보산업 및 신용정보 관리·유통 체계 >



- '09년 도입된 현행 신용정보산업 체계는 데이터 혁신을 주도하기에는 규제, 업무범위, 인프라 측면 등에서 한계
 - ① (진입규제) 산업분류와 허가단위 등이 체계적이지 않아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새로운 Player의 출현을 저해
 - ② (업무범위) 해외에서는 CB사가 빅데이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, 국내 CB사는 빅데이터 관련 업무 수행이 제약
 - ③ (정보인프라) 금융권에 공유되는 정보범위가 제한되어 있고, 인프라기관으로서 보다 다양한 금융권 지원기능이 요구됨
 - ④ (국민신뢰) 신용평가의 정확성·공정성·투명성 제고와 산업의 책임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

참고 1

현행 신용조회회사(CB사) 현황

- 현재 총 6개 신용조회사가 CB업을 영위 중으로 실제 영위하는 업무에 따라 개인CB사와 기업CB로 구분 가능
 - (개인CB) 금융거래 정보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금융회사에 여신심사 등 금융거래의 기초자료를 제공
 - 현재 3개의 신용조회사*가 개인CB업무를 영위
 - * NICE평가정보, KCB, SCI평가정보
 - (기업CB) 기업의 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신용등급 산정하거나, 기술신용정보 등 다양한 기업정보를 조사·수집하여 제공
 - 현재 5개의 신용조회사*와 1개의 신용조사회사**가 있음
 - * NICE평가정보, KED, 이크레더블, NICE디앤비, SCI평가정보
 - ** 한국 TDB신용정보 (일본기업 관련 신용조사업무 수행)

< CB사별 현황 비교('17년말) >

구 분	나이스 디앤비	나이스 평가정보	SCI 평가정보	이크레더블	KCB	KED	
회사설립일	02.10.12	85.2.28	92.4.23	01.8.6	05.2.22	05.2.22	
자본금	77억원	304억원	178억원	61억원	100억원	692억원	
주요 업무 비중	신용조회	71.1%	70.5%	23.7 %	100.0 %	88.1 %	82.5%
	개인	-	61.9%	5.4 %	-	88.1 %	-
	기업	71.1%	8.6%	18.3 %	100.0 %	-	82.5%
	모형판매	1.8%	8.2%	-	-	-	9.6%
	개인	-	4.1%	-	-	-	-
	기업	1.8%	4.1%	-	-	-	9.6%
	본인인증	-	7.0%	18.6 %	-	8.5 %	-
	기 타	27.1%	14.3%	57.7 %	-	3.4 %	7.9%

참고 2

신용정보집중기관 현황

-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회사·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여, 이를 금융회사·CB와 공유하는 공적(公的) 정보인프라
 - CB와 달리, (i) 신용등급 등 새로운 신용정보를 생산하지 않고, (ii) 수집·관리하는 원천정보(Raw data)만을 (iii) 금융권에만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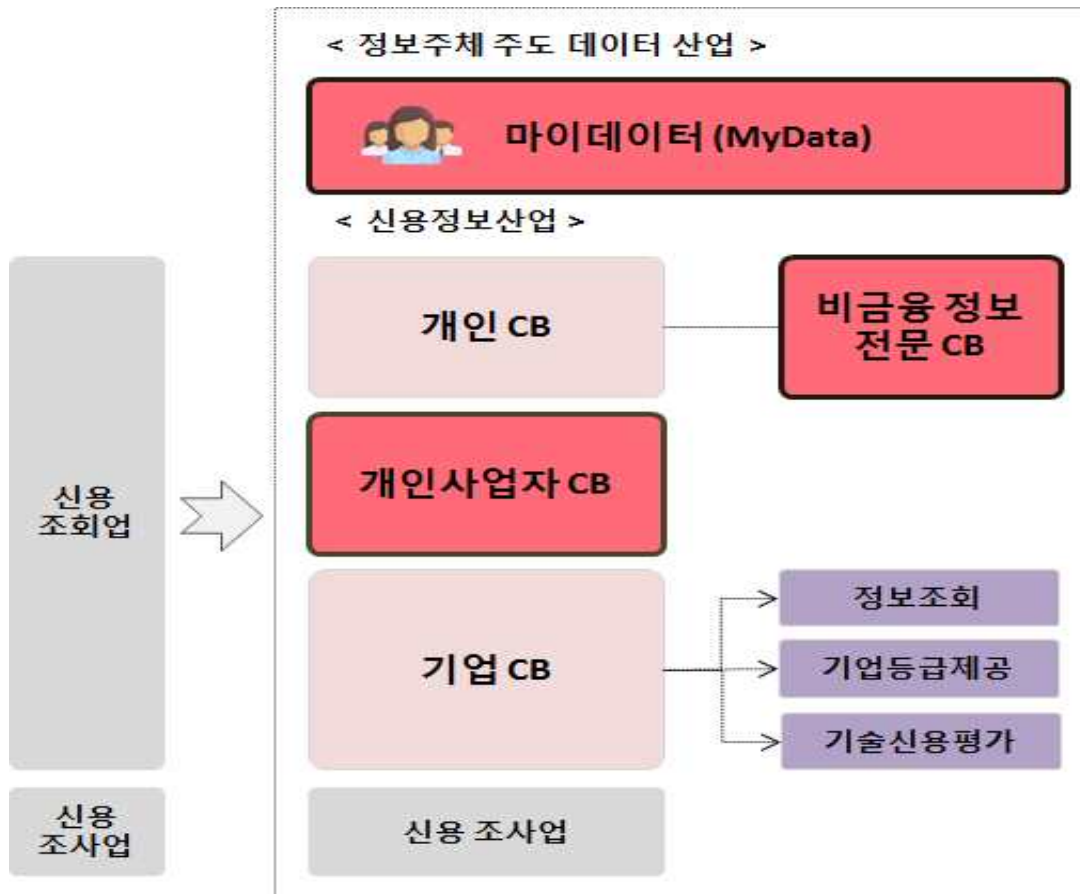
* 「신용정보법」상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수집대상 정보

- ① 금융회사(대부업자 포함) : 금융거래실적·연체·상환·대위변제·부도정보 등
- ② 신복위·행복기금 : 채무재조정·상환 실적 등
- ③ 공공기관(국세청·고용노동부 등) : 세금·고용·산재보험료 체납, 임금체불정보
- ④ 법원 : 개인회생·파산 정보,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등

- 현재 '한국신용정보원'(이하 "신정원")이 금융위 허가를 받아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수행 중
 - (개요) 5개 금융협회* 및 보험개발원의 신용정보업무를 승계 받아 '16.1월 통합출범
 - * 은행연합회, 금융투자협회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여신금융협회
 - (성격)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으로 '15.12월부터 「신용정보법」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 업무 중
 - (내용) 신용정보 집중관리·제공 외 다양한 관련 업무를 수행
 - 기술신용평가(TCB) 도입과 함께 ①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(TDB) 업무, ②빅데이터 등의 분석·제공 업무(컨설팅)
 - CB사가 기존에 수행해왔던 ③주소변경 통보대행업무 등도 수행

Ⅲ.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

- ◆ 마이데이터 산업, 비금융전문CB, 개인사업자CB 등 새로운 혁신적 Players의 출현을 위해 진입규제를 체계적 정비



- ◆ CB산업을 고부가가치 데이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CB사에 빅데이터 관련 업무가 가능하도록 함
- ◆ 산업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책임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, 신용평가체계의 정확성·공정성 검증을 통해 금융이용자 신뢰 제고
- ◆ 금융권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,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등 신정원의 기능을 확충하여 신용정보산업 인프라 선진화

1 혁신적 신규 Players 출현 유도

가.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* 7월 「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」 참고

□ 금융권은 개인신용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·활용하고 있으나, 개인은 자기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실정

○ 금리인하 요구, 신용평점 상승을 위한 정보정정청구 등 개인의 정보주권(개인정보 자기결정권) 활용도 활발하지 못함

□ 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·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마이데이터(MyData) 산업을 도입

①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일괄조회·관리·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신설

☑ 유럽GDPR(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, '18.5)의 **정보이동권** (Right to Data Portability) 및 PSD2(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, '18.1)의 **계좌정보서비스제공업**(AISP, 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) 제도 국내 도입

- 개인의 '신용정보 전송 요구권' 행사를 통해 금융회사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가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

-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, 금융회사 출자요건(50% 이상)은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여 경쟁과 혁신 촉진

②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 관리를 돕고, 맞춤형 상품 추천, 금융상품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

-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정보정정청구 등 정보관련 권리의 대리 행사 업무, 투자자문·일임업, 금융상품자문업 등을 허용

③ 정보보호·보안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

*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은 개인정보 오·남용 가능성이 없는 방식으로 설계

**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, 정보유출에 대응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

➔ 금융회사 및 CB사 중심으로 관리·활용되던 신용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되돌려주는 기반 마련

나. 개인사업자 CB사(SOHO CB) 도입

- 개인사업자 대출*은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나,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가 미비

* 개인사업자는 총 **663만명**(18.7말)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은 **598.4조원**(17년말)

- 금융회사는 정확한 위험관리가 어렵고, 신용판단에 기초하기 보다는 **보증·담보** 등에 의존하여 대출하는 관행

- 개인사업자의 경우, 실제 자금이 필요한 **소상공인, 영세 자영업자** 보다는 **담보확보가 용이한 부동산·임대업자** 등에 대출이 쏠림

- ☑ 개인사업자 대출의 **61%**가 **고신용차주** (금감원, '17년)
- ☑ 소상공인 대출의 **82%**가 **보증·담보기반** (중기부, '17년)
- ☑ 개인사업자의 **4.3%**에 불과한 **부동산·임대업 대출비중이 30.0%**

- 소상공인,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를 운영하는 **개인사업자 CB사**를 새롭게 도입

- ① 개인사업자 CB업을 신설하여, 신규 CB사의 진입을 허용

* 자본금은 개인CB업에 준하여 최소 50억원으로 설정할 계획

- 공공분야 보유 개인사업자 정보의 공유 확대 추진

- ②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*는 개인사업자 CB업 경영 허용

* 카드사는 가맹점별 상세 매출내역, 사업자 민원·사고이력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가능

- 카드사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**신용평가결과**를 은행 등 금융권에 제공하거나 자체 내부심사 모형에 활용

- 불건전영업행위*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행위규제 마련

* 상거래관계가 있는 자와 아닌 자를 차별하는 행위 금지, CB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강요 금지 등

- ➡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여,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**소상공인** 등에 대한 **효율적 자금배분**을 지원하고 **가계부채**를 안정적으로 관리

다. 비금융정보 전문 CB 도입

- 현재 개인신용평가는 대출·카드 등 금융정보 위주로 이루어져 금융이력이 부족(thin-filer)*한 경우 신용평가가 어려움

* 최근 2년내 카드·대출이용 실적이 없는 국민이 **1,107만명**('16년말, NICE)

- 개별 CB사 차원에서 비금융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, 활용 기준도 체계적*이지 못하고 활용도도 낮음

* 예 : 일부 리스·렌탈업체로부터 고객 체납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나, 특정업체 정보만이 활용되어 신용평가의 정확성·공정성 저해

- 비금융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비금융정보 전문 CB사 도입

- ① 비금융 개인신용정보(통신·전기·가스 요금납부, 온라인 쇼핑 내역, SNS정보 등)만을 활용하여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 도입

- ☑ 美 FICO : 통신료·공공요금 납부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위험 측정모형을 개발하여 약 1,500만명의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점수를 새롭게 산출
- ☑ 美 Lenddo : SNS 친구, 포스팅 등 260억개의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하여 개인신용평가를 실시

- ② 비금융정보 전문CB사에는 자본금 요건을 낮추고(최소 50억원→5/20억원)하고 금융기관 출자의무(50%)도 배제하여 진입규제 완화

통신사 등이 업무를 통해 취득한 통신료 납부내역 등 대량으로 수집된 정형정보를 활용하는 경우	최소 20억원
그 외 SNS분석 정보 등 비정형정보를 활용하는 경우	최소 5억원

- ③ 기존 CB사와 동일한 정보보호 규제를 적용하고,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행위규제 정비*

* 예: 계열회사 고객의 신용평점을 높게 평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

- ➔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적 신용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사회 초년생,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

- 금융이력이 적더라도, 통신료·유틸리티 사용료 등을 성실히 납부한 경우, 신용평점이 개선되어 금융거래조건이 개선

라. 진입규제 정비

□ 마이데이터 사업자, 개인사업자 CB, 비금융정보CB 신설과 함께 CB산업 허가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

① CB업 허가 단위를 업무 실질에 따라 **개인CB**(개인신용평가업), **개인사업자CB**, **기업CB**(기업신용조회업)로 구분

	개인 CB	개인사업자CB	기업CB
처리정보	개인 신용정보	개인사업자 신용정보	기업 신용정보
활용목적	여신 등 금융거래	여신 등 금융거래 위주	금융거래, 상거래
평가방식	통계모형 등 정량평가	통계모형 등 정량평가	주로 정성적 평가
자본금	최소 50억원	최소 50억원	최소 50억원 → 5/20억원

② 업무내용이 다양한 **기업CB업**은 **기업정보조회업**, **기업신용등급제공업**, **기술신용평가업(TCB)**으로 세분화

[정보조회] 기업신용정보를 수집·통합·분석·가공하여 조회자에게 제공
 [기업등급제공] 기업·법인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을 생성·제공
 [기술신용평가] 기업의 기술가치 등을 평가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생성·제공

③ 상대적으로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**기업CB업***은 허가단위별 규제 필요성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합리적 완화

* **기업간 자금중개, 상거래** 등을 지원하는 **인프라**로서 (개인CB와 달리) 데이터의 **중개·제공**이 중요

	현행		기업등급제공, 기술신용평가	정보조회업
최소 자본금	50억원	→	20억원	5억원
금융권 출자(50%↑)	적용	→	적용	배제



- 기업등급제공, 기술신용평가 업무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력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, 국내외 신용평가사 등의 진입은 당분간 제한

④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**기술신용평가업(TCB)**의 경우 특허 법인·회계법인 등의 신규 진입도 적극 유도

➔ 업무실질에 맞는 허가단위 운영을 통해 산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신규 **Players** 진입을 통한 산업 내 경쟁과 혁신 유도

2 CB사에 빅데이터 업무 허용

- 선진국의 경우 데이터를 다량으로 보유한 CB사들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다양하게 출시하며 빅데이터 시장을 선도

美 CB사 사례 : 	濠 CB사 사례 : 
<p>美 3대 CB사 중 하나인 Experian사는 보유 데이터(금융거래정보, 임대료 정보 등)를 활용한 소비자 분석을 실시하여 기업에 전략수립 및 소비자분석 등 빅데이터 컨설팅 서비스 제공</p> <p>* 이익의 23%가 컨설팅 수입</p>	<p>호주 CB사인 Veda사는 통계청 정보 및 신용정보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전략 수립 및 주요상권 분석을 위한 컨설팅 제고</p>

- 반면, 우리나라의 경우 '15.9월 이후 정부·공공기관에 대한 분석·조사업무 등 일부업무 外 영리목적 겸업이 금지'*
 - * '15.9월 이전에는 CB사가 '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, 법률지원 서비스, 데이터 분석 교육서비스' 등을 수행
- CB사는 양질의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, 데이터 분석·관리 역량이 높아 관련 업무 수행에 강점
- CB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에 따라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업무*를 허용하여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도모
 - * ㉠가명·익명정보의 이용·제공, ㉡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, ㉢데이터 관련 솔루션 및 S/W 개발·판매 업무 등
- CB사가 해외처럼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 수립, 상권분석, 다양한 대출모형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
- ➔ CB사의 업무를 다양화하여 독자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, 금융분야 빅데이터 산업에서 시장선도적 역할을 유도

3 신용정보산업 인프라 정비

가. 금융권 정보공유 확대

- 신용정보산업 내에서 집중·공유되는 정보범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, 여전히 정보인프라로서의 완결성이 부족
 - 이에 신용평가결과의 정확성이 부족하고, 금융권 정보공유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과잉대출을 받는 등의 사례도 일부 상존
 - 차주의 총제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 제도를 도입했음에도, 대부업 정보는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아 대부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, DSR 규제를 넘어 은행권 대출이 가능
 -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금융권 공유 확대 추진
 - ① 공공정보의 경우 조세체납 등 부정적 정보만 공유되고 있으나, 세금·사회보험료 성실납부 이력 등 긍정적 정보도 공유 필요
 -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필요한 주요 공공정보도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
 - * 공공데이터 공개·활성화 차원에서 국세청·행안부·복지부 등과 협의 중
 - ② 금융정보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쏘금융권에 공유
 - 기존에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았던 대부업 정보*, 보험약관 대출 정보 등을 쏘금융권에 공유('19.上~)
 - * 현재는 CB사, 저축은행, 인터넷전문은행 ↔ 대부업간에만 관련 정보가 공유
 - 다만,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·감독 강화를 병행
 - * 예: 대부업 거래 정보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없이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조건(가산금리 등) 등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
- ➔ 균형있고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해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체계 등 금융권 위험관리 고도화

나. 신용정보원의 공공인프라 기능 확충

- 정보산업의 인프라기관인 신정원은 신용정보 집중관리·제공 外的 금융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기능도 제고할 필요
- 신용정보산업 지원을 위한 신정원의 공공인프라 기능 확충
 - ① 신정원,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데이터 결합, 금융회사 등의 익명조치의 적정성 평가 업무*를 부여
 - * 금융회사의 익명조치가 추가정보를 활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검증, 검증 後 익명정보로 추정
 - 신정원·금융보안원의 데이터 활용·분석·관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 - ② 데이터시장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DB·분석시스템* 구축하고 중소형 금융회사 및 창업·핀테크기업의 데이터활용 지원
 - * 신정원,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조치한 뒤 표본DB 또는 맞춤형 DB화하여 제공하거나, 신정원 내 분석도구·보안체계를 활용하여 자신이 보유한 DB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
 - ③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*을 확대 개편하여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·관리할 수 있도록 함
 - * 본인의 금융권 채무에 대한 채권자 변동이력 등을 일괄조회하는 시스템
 - 조회대상 채무*를 개인사업자 채무 등까지 폭넓게 확대
 - * (현행) 개인 대출채무 → (개선) 개인·개인사업자 대출채무, 카드결제 대금·보험계약 대출, 신보·SGI 등의 대위변제 구상채무 등
 - 본인에 한해서는 장기간* 채권자 변동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
 - * 금융권에 공유되는 정보와 분리보관함을 전제로 정보보유기간 제한 없이 채권자 변동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신설
- CB사 등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(예: 주소변경 통보 대행 업무)는 민간구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 축소·폐지

4 CB업 책임성 · 투명성 제고

- CB업은 금융거래 등에 기초가 되는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등 국민의 경제·금융생활에 영향력이 큰 산업
 - CB산업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칙을 강화할 필요
 - CB사의 지배주주 변경승인, 임원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규율은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
 - 개인신용등급 산정 등으로 영업의 책임성 확보 필요성이 특히 높은 개인 CB사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자격심사제도*도 도입
 - *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에 대해 2년마다 금융관련법령,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미충족시 의결권 제한 등 조치
 - 정확하고 공정한 신용평가를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
 - ① CB사가 신용평가지 준수해야 하는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
 - * 예 : (개인CB) 성별·학력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금지
(기업CB) 계열사 상품 등의 구매 등 강제 금지, 내부통제기준 마련
 - ② CB사가 신용평가체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신용정보원에 설치된 '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'로부터 심의받도록 함
 - 학계, 전문가,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'검증위원회'가 평가모형, 민원 및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*하고 그 결과를 공개
 - * 평가 기초정보의 공정성 및 정확성,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및 안정성, 신용교육 등 소비자 지원 방안 등
 - CB사는 지적사항을 평가체계에 반영하도록 하여 신용평가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함
- ➔ CB사의 책임성, 신용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신용정보 산업 및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금융이용자 신뢰를 제고

IV. 향후 추진계획

1 추진일정

- 11.15일 발의된 「신용정보법」* 개정안에 동 방안을 포함되어 있는 만큼,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 경주

*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 대표발의

-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또는 법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

2 추진과제별 상세일정

과 제			일 정
마이데이터, 비금융정보 전문CB, 개인사업자 CB 등 혁신적 신규 Players 출현 유도			■ '18년 중 「신정법」 개정
CB사에 빅데이터 관련 업무 허용			■ '18년 중 「신정법」 개정
신용정보산업 인프라 정비	금융권 정보공유 확대	공공정보 등 공유 확대	■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 ■ '18년 중 「신정법」 개정
		금융권 정보공유 사각지대 해소	■ 「신정법」 하위법령 개정 ■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
	신정원 기능 확충	데이터 전문기관 역할 수행	■ '18년 중 「신정법」 개정
		빅데이터 DB·분석시스템 구축	■ '19년 상반기 시행 예정
		채권자변동조회 시스템 확대 개편	■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■ '18년 중 「신정법」 개정
	CB업 책임성·투명성 제고	지배구조·영업행위 규제 도입	
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설치		■ '18년 중 「신정법」 개정	